

KERI Brief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keri.org)

1993년 말 도입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계속 강화되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3개국(韓, 美, 日)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이전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산의 적절한 활용이 저해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도 자체, 다른 제도와 의 형평,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되어야 한다.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행 상속세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고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유산 취득과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이다. 어느 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상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 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 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되

어야 한다. 먼저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기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국제조세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증여세만이라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상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 검토 배경

□ 1993년 말 도입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계속 강화되고 있음

* '세대생략할증과세'란 상속인·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인 경우(예,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한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1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증여를 함으로써 그 자녀가 부담하여야 할 한 차례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음
- 1997년 할증률을 10% 인상(20% → 30%)하고, 2016년 미성년자(20억 원 초과시)에게는 40%로 할증률을 증과하는 등 과세가 강화되고 있음

□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3개국(韓, 美, 日)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와 반대에 위치한 제도임

* 2000년대 들어 7개국(포르투갈, 스웨덴, 멕시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상속세 폐지

- 미국은 2010년에 폐지되었던 유산세와 세대생략세가 2011년 부활했지만, 계속적으로 과세가 완화(공제액 확대, 현재 1,120만 달러¹⁾)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유산세 등의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특정 경우 상속시 정산과세*를 통해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해서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함

* 60세 이상 부모가 20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5백만 엔을 공제하고 20%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 산정, 추후 상속시 증여세액 공제 및 환급

** 일반적인 증여과세(역년과세)를 적용할 경우 공제액이 110만 엔이고, 세율은 10~55%임

□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로의 이전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산의 적절한 활용이 저해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산이전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자산의 빠른 이전으로 자산을 좀더 유효하게 활용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와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현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려 함

1) 약 125억 4천만 원. 공제액은 2009년 350만 달러에서 점점 확대되어 2018년 1,12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음(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임)

II. 세대생략할증과세 현황 및 국제 비교

1. 연혁 및 현행 제도

- 1993년 말 상속세및증여세법²⁾ 전면개정시 조부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함으로써 그 자녀가 부담하여야 할 한 차례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이전에 대하여는 일반 상속·증여시의 세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³⁾
- 이후 1996년 말 상증세법 개정시 할증률을 30%로 강화하였고,⁴⁾ 2015년 말 미성년자(20억 원 초과)에게는 할증률을 40%로 증과하도록 개정되는 등 과세가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후에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풍조에 따라 그 할증률을 강화하여 왔음
- 국내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이유로 세대생략의 재산무상이전은 1세대 1회 부과 원칙, 부의 광범위한 분산유인 등의 여러 가지 목적 중 어느 것과도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함⁵⁾

-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에 상속(증여)재산⁶⁾ 중 그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미성년자이며 20억 원 초과시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⁷⁾⁸⁾
-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⁹⁾나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하지 않음
- 세대생략가산액은 다음과 같음

- 2)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 3) 재정경제부, 「'93 간추린개정세법」, 1994, pp.229-230
- 4) 재정경제부, 「'96 간추린개정세법」, 1997, pp.350-351
- 5) 최명근,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 p.122
- 6)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 7) 상증세법 제27조, 제57조
- 8) 직계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가증과세가 되고, 방계조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뛰어도 그렇지 않음. 다만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재삼46014-1712(1997. 7. 14)]
- 9)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당시 생존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예컨대, 손자 또는 배우자)이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그림 1〉 세대생략가산액

세대생략 가산액	=	상속세 (증여세) 산출세액	×	$\frac{\text{피상속인(증여자)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text{총상속(증여)재산가액}}$	×	$\frac{30^{**}}{100}$
-------------	---	----------------------	---	---	---	-----------------------

* 상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정리

** 상속인(수증자)이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2.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대생략에 관한 할증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므로 두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려 함

1) 미국

□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ax)는 1976년 에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되는 유산신탁(estate trust)에 대하여 권리나 지분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입되었음¹⁰⁾

○ 세대생략세는 세대별로 순차적으로 자산이 세습 되거나 아니면 신탁을 통하여 한 세대를 건너서 자산이 세습되든지 양쪽 모두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중간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하여 최고세율로 추가과세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함¹¹⁾

○ 세대생략세는 유산인의 세대보다 2세대 이상 젊은 친족이나 유산인보다 37.5세 이상 젊은 친족이 아닌 사람이 직접 받는 자산이나 신탁의 이전에 대하여 적용됨¹²⁾

○ 세대생략세는 단일세율로 유산세(상속세)의 최고 세율(40%)이 부과되고, 유산세와 통합하여 2018년 기준 1,120만 달러 한도의 면세가 적용됨

- 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유산세와 함께 폐지되었다가 2011년 다시 부활하였음¹³⁾

□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납세의무자] 세대생략세의 납부자는 그 유형에 따라 자산이전자, 신탁 관리인(trustee) 또는 세대를 생략한 수증자가 됨¹⁴⁾

- 첫 번째, 직접적인 세대생략 이전에서는 '자산을 이 전한 사람'
- 두 번째, 신탁 자산지분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 관 리인'
- 세 번째, 과세대상 원금 분배에 있어서 '수증자'

○ [과세대상] 세대가 생략되려면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해주는 사람보다 2세대 이상 젊거나 혹은 이 와 같은 사람이 신탁의 지분을 모두 보유해야 함

-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 직접적인 세대 생략이 됨. 또는 할아버지가 신탁의 소득을 아버지에게 제공하고 아버지 사망 시 잔여 자산을 손자에게 양도하면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 전이 됨¹⁵⁾¹⁶⁾

- 세대생략세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음.
①세대를 생략한 직접적인 이전(direct skip), ②세 대를 생략한 사람에게 자산이 이전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는 이전(indirect skip)이 있음¹⁷⁾

10) The Tax Reform Act of 1976, § 2006
 11) John K. McNulty and Grayson M.P. Mccouch,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West Publishing, 2003, p.21
 12) IRS Form 709 Instructions
 13) 미국이 상속과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는 동 안 학계 내지 조세정책가들은 상속과세를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수년간 논쟁을 거듭하였음. 결과적으로 폐지론을 채택하여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를 폐 지하였음(川端康之, "アメリカ合衆国における相續税・贈與税の現況", 「日税研論集」 Vol.56, 日本税務研究セン ター, 2004, pp.32-33)
 14) IRC Section 2603
 15) 반면에 다이너스티 트러스트(dynasty trust) 같은 신탁을 만들어서 여러 세대의 사람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세대생략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신탁이 유지되는 동안 유 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의 한도는 유산세 한도액인 1,120만 달러임. 또한 신탁의 재산이고 개인의 재산이 아니 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점도 있음 (<http://www.investopia.com/articles/tax/09>)
 16) 예외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손·자녀에 대한 양도는 세대생 략으로 간주되지 않음(IRC Section 2612(c)(2))
 17) IRC Section 2612(c)

* 두 번째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대를 생략한 자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의 (2-1)과세대상 원금 배당과 (2-2)과세대상 신탁 자산 지분의 이전임¹⁸⁾¹⁹⁾

- 세대생략세가 부과되면 세대가 생략된 사람에게 유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지분)의 양도가 발생해야 함.²⁰⁾ 신탁에게 자산이 양도되면 신탁의 수증자가 신탁의 원금(corpus)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권리(present right)가 있어야 세대생략세가 부과됨

○ [과세표준 및 세율] 직접적인 세대생략 이전에서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액', 과세대상 원금 분배의 경우 수증자가 '배당받은 금액', 신탁 자산지분 이전의 경우 권리가 이전된 시점에 '평가된 자산가액'이 과세대상이 됨

- 세대생략세는 유산세 최고세율인 40%로 과세되며,²¹⁾ 유산세와 통합적용되는 면세액 1,120만 달러가 적용됨

□ 2001년 부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 등²²⁾을 제정하여 2010년에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고, 유산세와 증여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했음²³⁾

○ 그러나 2010년 폐지 예정이었던 유산세 등이 다시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2011년 부활되었음.²⁴⁾ 다만, 유산세의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35%로 인하하고, 2012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면세점을 인상하기로 하였음²⁵⁾

- 이후 2013년 유산세는 과세표준 1백만 달러 초과 구간(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음²⁶⁾

○ 2011년 유산세 등이 부활되었지만, 미국의 유산세 관련 세제는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최고 유산세율이 40%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임. 각종 면제조항, 공제 등²⁷⁾을 적용받아, 유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18) IRC Section 2612(a), (b)

19) 직접적인 이전을 제외한 다른 두 가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시점에 증여세만 부과하고 그 이후 원금 배당이나 지분 이전이 발생할 때 세대생략세가 부과됨(Randall J. Gingiss, Estate and Gift Tax(16th Edition), Thomson West, 2005, p.278)

20) IRC Section 2652(a)(3)

21) 미국 유산세 세율 및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음

(단위: 달러)

과세구간 (초과)	과세구간 (이하)	세율	과세구간 (초과)	과세구간 (이하)	세율
0	10,000	18%	100,000	150,000	30%
10,000	20,000	20%	150,000	250,000	32%
20,000	40,000	22%	250,000	500,000	34%
40,000	60,000	24%	500,000	750,000	37%
60,000	80,000	26%	750,000	1,000,000	39%
80,000	100,000	28%	1,000,000	-	40%

자료: Department of the Treasury, For decedents dying after December 31, 2016 United States Estate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Table a -Unified Rate Schedule, August 2017, p.8

22)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과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The Job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이 제정되어 적용되었음

23) 유산세의 면세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01년 675,000달러에서 2009년 350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며 2010년 사망하는 납세자의 유산에는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았음. 세대생략세의 세율은 2001년 55%에서 2007-2009년에는 45%로 하락하였고, 세대생략세에서 자산의 양도자가 평생 면세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만 달러에서 2004년 유산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하였음. 다만, 상속을 계기로 자동적으로 stepped-up이 되어 오던 자산의 basis가 2010년에는 carry-over 방식으로 변경되었음(2003 JGTRRA, § 541). 즉, 상속인이 향후 자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종래 취득한 가액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음

24) 다만, 2010년 중 상속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음. 첫 번째는 stepped-up basis와 35%의 세율, 500만 달러의 공제액이고, 두 번째는 유산세는 없고 carry-over basis를 적용받는 것임

25) 그리고 자산의 basis는 carry-over 방식 대신 stepped-up 방식으로 변경되었음(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2010, § 302)

26)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27) 통합면세액(유산세, 세대생략세 통합적용),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등

- 트럼프 대통령은 상속세 제도를 영구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2025년까지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음²⁸⁾
- 2017년 말 지속적으로 물가와 연동하여 증가하던 통합면세액을 2017년 기준 549만 달러에서 2018년 기준 560만 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면세액을 2배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1,120만 달러로 확대했음²⁹⁾

2) 일본

□ 세대생략세는 재산취득자가 피상속인의 친재(親子(一))¹⁾: 일본에서는 이를 -親이라 함] 관계의 혈족 및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 산출한 상속세액에 20%를 가산함

- 세대를 생략한 자뿐만 아니라 1촌 혈족이 아닌 자는 모두 할증과세하고 있음³⁰⁾
 - 상속세는 상속·유증(사인증여를 포함) 또는 증여(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에 의해 재산³¹⁾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됨³²⁾
 - 일촌 등의 혈족 범위는 다음과 같음
 - *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되는 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을 때 또는 상속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함³³⁾
 - *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되지 않는 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양자가 된 경우에는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되지 않음.³⁴⁾ 다만, 입양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양자로 된 경우에는 입양 후 피상속인의 일촌의 혈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액의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³⁵⁾
- 상속세는 10%에서 5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³⁶⁾ 일촌 등의 혈족이 아닌 세대생략의 경우 상속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함

□ 일본 세제조사회의의 2008년 자료를 보면 상속·증여세를 통한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³⁷⁾ 이는 상속·증여세의 기본방향이 되었음

- 계속적으로 증여세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마련하는 등 생전증여를 용이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하고 있음³⁸⁾

- 28) The Economist, "Death of the death tax-Taxing inheritances is falling out of favour", 2017.11.23
- 29) 'Tax Cut and Jobs Act of 2017', 2025년까지 다른 법안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통합면세액은 2026년 1월부터 2017년 수준인 549만 달러로 복귀될 것임
- 30) 일본 상속세법 제18조
- 31) 상속재산 취득자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함
- 32) 상속인, 유산을 받은 자(수증자),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安島和夫, 「相続税法 - 理論と計算」, 税務経理協会, 2010, p.6)
- 33) 일본 상속세 기본통달 18-4
- 34) 일본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 35)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질의응답 사례 참조 (<http://www.nta.go.jp/shiraberu/zeiko-kaishaki/shitsugi/sozoku/01/htm>).
- 36) 일본 상속세 세율 및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음

(단위: 만 엔)

과세구간 (초과)	과세구간 (이하)	세율	과세구간 (초과)	과세구간 (이하)	세율
0	1,000	10%	10,000	20,000	40%
1,000	3,000	15%	20,000	30,000	45%
3,000	5,000	20%	30,000	60,000	50%
5,000	10,000	30%	60,000	-	55%

자료: 일본 상속세법 제16조

상속세 공제액은 정액공제 3천만 엔과 상속인당 600만 엔을 더한 금액임

- 37) 税制調査会, "平成21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2008.11.
- 38) 소자녀·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이전의 증가가 있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음

○ 2003년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였음³⁹⁾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수증자가 역년 과세(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따른 기존의 과세방식⁴⁰⁾ 대신, 증여시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시 그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하는 제도임
- 증여자별로 1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2,500만 엔(누적 총 공제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적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부모가 20세 이상의 자녀(2015년부터 손자녀 포함)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에 대해서 증여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있음

- [주택취득자금 증여 비과세]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을 위한 금전을 증여 받은 경우 일정 면세한도액⁴¹⁾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됨⁴²⁾⁴³⁾

* 수증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2,000만 엔 이하이어야 함

- [교육자금 증여 비과세] 2013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증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30세 미만 수증자의 교육자금⁴⁴⁾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자금계좌를 개설한 경우⁴⁵⁾에는 신탁수익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 중 1,500만 엔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됨⁴⁶⁾⁴⁷⁾

- [결혼육아자금 증여 비과세] 2015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직계존속이 자녀(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한정)의 결혼·육아자금⁴⁸⁾에 충당하기 위해 결혼·육아자금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⁴⁹⁾에는 그 신탁수익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 중 1,000만 엔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됨⁵⁰⁾⁵¹⁾

39) 일본 상속세법 제21조의9

40) 매년 110만 엔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누진세율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

41) 비과세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만 엔)

취득 등 계약체결일	에너지절약 주택	이외의 주택
~ 2015.12.	1,500	1,000
2016.1. ~ 2020.3.	1,200	700
2020.3. ~ 2021.3.	1,000	500
2021.4. ~ 2021.12.	800	300

자료: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 제6항, 제7항.

42) 国税庁ホームページ, “No.4508 直系尊属から住宅取得等資金の贈与を受けた場合の非課税”, 2018.8.6. 방문

43)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

44) 교육자금은 다음의 (1) 또는 (2)에 정한 금전을 말함

- (1) 학교 등에 직접 지불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금전으로 일정한 것
- (2) 학교 등 이외의 자에게 교육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전 기타 교육을 받기 위해 직접 지불하는 금전으로 일정한 것

45) ① 신탁 수익권을 부여받은 경우, ② 서면 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을 은행 등에 입금한 경우, 또는 ③ 서면 증여로 취득한 금전 등으로 증권회사 등으로 유가증권을 구입한 경우

46) 国税庁ホームページ, “No.4510 直系尊属から教育資金の一括贈与を受けた場合の非課税”, 2018.8.6. 방문

47)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의2

48) 결혼·육아자금은 다음의 (1) 또는 (2)에 정한 금전을 말함

- (1) 결혼시 지출하는 다음과 같은 금전(300만 엔 한도)
 - 예식 비용, 의상 요금 등의 혼례 (결혼 연회) 비용
 - 임대 보증금 등의 비용, 이사 비용
- (2) 임신,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금전
 - 불임 치료, 임신부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분만 비용 등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아이의 의료비, 유치원·탁아소 등의 보육료(탁아 서비스 요금 포함) 등

49) ① 직계존속과 신탁회사와의 사이의 결혼·육아자금 관리계약에 따라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② 그 직계존속의 서면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을 결혼·육아자금 관리계약에 따라 은행 등의 영업소 등에서 예금 또는 저축으로 입금을 한 경우, 또는 ③ 결혼·육아자금 관리계약에 따라 그 직계존속의 서면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 등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소 등에서 유가증권을 구입한 경우

50) 国税庁ホームページ, “No.4511 直系尊属から結婚・子育て資金の一括贈与を受けた場合の非課税”, 2018.8.6. 방문

51)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의3

3) 시사점

□ **현재 상속세에 대한 국가들의 추세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거나, 상속과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임**

○ 미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2000년대부터 유산세를 인하 및 면세한도의 상향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2010년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음

- 모든 세대생략세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제 하에 일정범위 내의 금액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유산세와 통합하여 적용되는 한도가 1,120만 달러로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음

○ 일본 또한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를 하고 있음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교육·결혼육아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음

○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각국의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가 도입된 이래 국민 정서상 상속세를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다른 국가들의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속세 및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정비가 요구됨

-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소수의 국가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특히 일본의 경우 상속세에만 세대생략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대상에서 증여를 제외하는 방법도 완화방안이 될 것임

III.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로의 이전이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략이전되는 중간세대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이런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1. 유산과세와의 모순

□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남겨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음⁵²⁾

○ 현행 상증세법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데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할증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음

- 유산과세체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과세하면 되는 것일 뿐이므로 세대마다 과세한다는 원칙은 부의 무상이전을 저해할 수 있어 보이며,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유산취득과세*를 취할 때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임

* 유산취득과세는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편법이전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 정서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단순 폐지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고,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범위나 공제에 대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기업승계세제 및 단기재상속 공제와 취지 및 실질적인 측면에서 세제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기업승계제도와의 형평성

□ 기업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일정범위의 물적 공제를 허용하여 그 세부담을 감해주고 있음

○ '기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면 기업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52) 다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상 편의를 위해서 증여자 기준이 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음

-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⁵³⁾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임⁵⁴⁾⁵⁵⁾

○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세제개선의 주요 방법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왔음

-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여 상속세법을 1996년 말 전부개정하면서 최초로 기업상속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요건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기업승계의 지원이 어려웠음. 그 후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으로 인해 그 활용은 저조한 상황임

▣ 이런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상속과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세대생략할증과세 또한 세율이 강화되기만 하고 다른 고려는 없는 상황임

○ 기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⁵⁶⁾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기업승계제도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그 목적과 배치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기업승계시 완화하지 않는 것은 세제 간 형평상 불합리함

- 특히 세대생략할증과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령화된 사회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지 못할 것임

○ 따라서 세대생략할증과세 제도에 있어 기업상속에 허용되는 정도의 요건과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완화책이 필요함

53)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55)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기업상속공제 가능

요건	기준	상세 내용
기업	계속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2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 원 미만
피상속인	주식보유 기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1가지 충족)	•기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나 이	•18세 이상
상속인	기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기업에 종사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중견기업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정리

5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은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법률 제8827호(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문)

2) 단기재상속공제와의 형평성

□ 단기재상속공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의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⁵⁷⁾

- 단기재상속공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⁵⁸⁾
- 공제액은 다음의 세액공제기준액에 전상속의 개시시점부터 재상속의 개시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른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함
 - 일정률은 재상속이 1년 이내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100%, 재상속의 개시시간이 1년씩 길어질 때마다 10%씩 줄어들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위의 단기재상속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기재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전자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음

-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형평상 불합리함

- 또한 상속이 반복되어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단기재상속공제의 취지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경우(중간세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치가 단기재상속공제의 경우보다 더 크게 감소하므로⁵⁹⁾ 형평성에 어긋남
- 두 제도의 형평상 불합리한 결과는 다음 표의 사례를 통해 예상할 수 있음
 - ① 할아버지가 50억 원을 손자(미성년자 아님)에게 상속하고 아들이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세대생략할증과세)와 ② 할아버지가 50억 원을 아들에게 상속하고(②-1) 3년 이내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다시 상속받은(②-2) 경우(단기재상속공제)
 - 두 제도를 비교해보면 세대생략할증과세(①)의 경우 5.32억 원의 더 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

57) 상증세법 제30조 제1항

5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196, 판결문 참조

59) <표 1>의 사례에서 상속세 차감 후 상속재산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경우(50-23.27=26.73억 원) 단기재상속공제의 경우(50-17.95=32.05억 원)보다 5.32억 원 더 감소된 재산가치가 남게 됨

<그림 2> 세액공제기준액

$$\text{세액공제 기준액} = \text{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재상속분의 재산가액} \times \frac{\text{전의 상속세과세가액}}{\text{전의 상속세재산가액}}}{\text{전의 상속세과세가액}} \right)$$

* 상증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표 1〉 세대생략할증과세와 단기재상속공제 사례 비교

구 분	세대생략할증과세(①)	단기재상속공제(②)		비 고
		1차 상속(②-1)	2차 상속(②-2)	
상속재산가액	50억 원	50억 원	32.1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5억 원	
과세표준	45억 원	45억 원	27.1억 원	
산출세액	17.9억 원	17.9억 원	9.24억 원	
세대생략할증세액	5.37억 원	-	-	
단기재상속공제액	-	-	9.19억 원	일정률 80%
총납부세액	23.27억 원	17.9억 원	0.05억 원	①-② = 5.32억 원
		17.95억 원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함(상중세법 제30조 제3항)

- 따라서 세대생략할증과세 제도에 있어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적합성

1) 고령화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일찍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음.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⁶⁰⁾⁶¹⁾

-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한국의 국가별 인구 순위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저출산 및 노령화로 2032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해 2065년에는 2015년보다 799만 명이나 줄며,⁶²⁾ 2065년에는 10명 중 4.25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령화지수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의 고령화를 수반하며, 이는 경제성장의 주력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 전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필

수적으로 수반되며 기업이 승계되는 시점에서 승계로 인한 보유 지분율의 감소와 경영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발생함

- 현재 기업승계와 관련되어 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조세비용이 원활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⁶³⁾

- 하지만 부의 이전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부당한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므로, 부의 세대 이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경제구조의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및 제도의 전환이 필요함

6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12.8.

61)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말함

62) 2015년 5,101만 명, 2065년 4,302만 명

63) 중소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7.1., 188쪽

▣부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부실화 및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작게는 기업부터 크게는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는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과도한 할증과세로 인하여 투자위축이나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상속시 과중한 과세로 인하여 편법 상속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일 것임

- 또한 이 제도는 조세중립성 측면에서도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을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특히 증여세만이라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고령자 보유 자산의 젊은 세대로의 조기 이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국제화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하고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는 민간 경제활동의 국내외 구분을 없애고 있음

○자본은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게 되고, 아울러 거둔 이익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

는 데 제약이 적은 곳을 선호함. 즉, 세금부담이 낮은 곳은 이러한 자본의 요청에 부합하게 됨

- 이처럼 경제의 글로벌화는 국가 간의 지나친 투자 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세목과 세율에 대한 자본이동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임

○세계 각국이 개방경제 하에서 자국의 세부담을 인하하는 등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여 자국 자본을 국내에 머무르게 하고, 외국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한도 안에서 노력하고 있음

- 경제가 글로벌화된 지금, 개인 또는 기업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각자에게 가장 세금부담이 적은 지역을 찾아 움직일 것임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임⁶⁴⁾

○자산을 이전하고 거주지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조세정책을 외국보다 유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여야 함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해 보아야 함

-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도입한 미국·일본도 상속과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세율 인하나 공제한도의 확대 등 제도의 완화만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64) 조경엽,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16-13, 한국경제연구원, 2016.7

IV. 개선방향 제언

▣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일 것이므로,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소수의 국가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지금까지 살펴본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도 자체, 다른 제도와의 형평,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음.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할증과세를 하기 때문임

- 두 제도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이므로 어느 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및 국민정서상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일정 공제액을 인정하는 등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두 번째, 다른 두 가지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맞는 완화방안이 필요함

- 먼저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등의 완화방안이 필요함

*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기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함. 다른 방법으로는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존 할증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등의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맞는 완화방안이 필요한 것임. 다만 요건에 근로자의 승계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익성을 추가하여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일정한 공익에 기여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는 것이 제도 간 형평에 있어 타당할 것임

○ 세 번째,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국제조세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것임

- 이 제도는 조세중립성 측면에서도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을 저해하므로 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완화되어야 함

-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증여세만이라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네 번째, 상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8년 12월 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